

이 안내문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에게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자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문화를 이해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 이주배경 보호자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방법



한국의 모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모두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한국 사회와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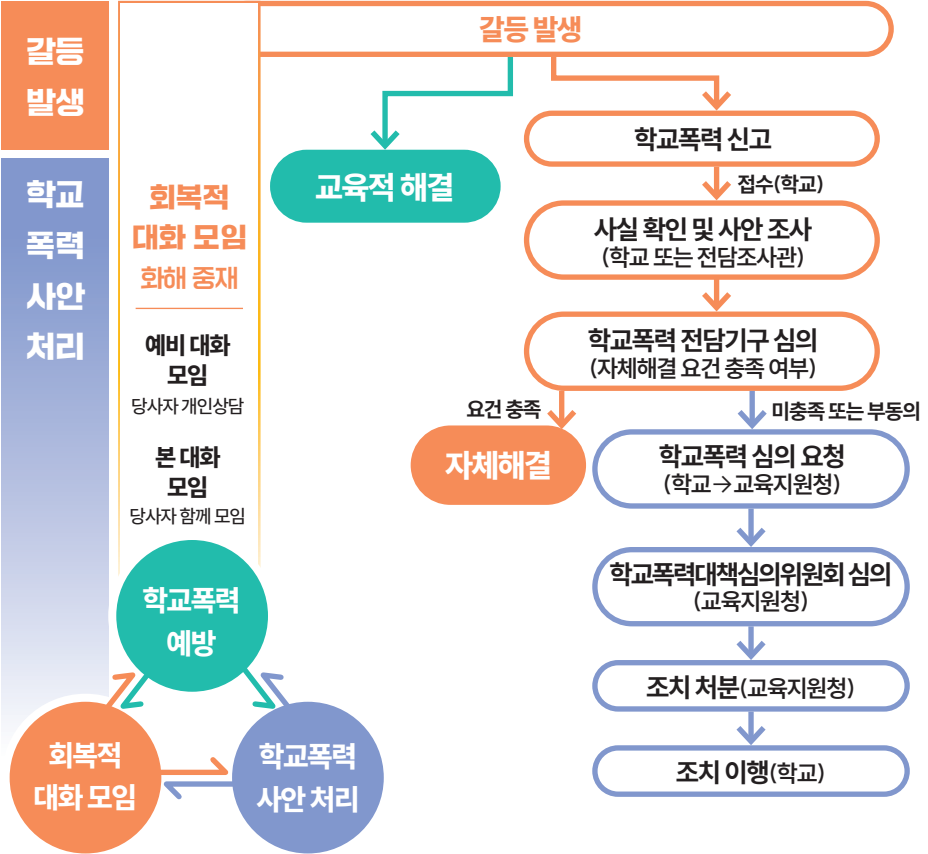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BUCHEON OFFICE OF EDUCATION

# 학교폭력, 교육적 노력과 대화로 해결해요!



|                |                  |                    |
|----------------|------------------|--------------------|
| 학교<br>폭력<br>예방 | 관계<br>형성 및<br>개선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                |                  | 학교폭력 목격 시 방어 방법 교육 |
|                |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육 |



- ✓ **관계 형성 및 개선** :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기
- ✓ **회복적 대화 모임** : 함께 모여 마음을 풀고 대화로 갈등 해결하기
- ✓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과 알아보기
- ✓ **조치 처분 및 조치 이행** :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및 실천하기

# I 학교폭력 예방

## 01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

Ⓛ중요한 기준: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 02 가정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평소 자녀에게 보이는 말과 행동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자녀가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매일 대화하세요.
- 친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보도록 해주세요.
- 따돌림당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돕도록 해주세요.
- 자녀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인사, 대화, 마음 표현, 마음 다스리기, 거절하는 방법 등)
-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보호자, 교사)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 03 학교폭력 가해 예방을 위해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장난이라도  
상대가 싫어하면 멈춰요.



단톡방, SNS 등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켜요.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해요.

04 학교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안돼, 그만해'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보호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온라인 상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하세요.



갈등이 생기면 바로 해결 방법을 찾아요.

05 학교폭력 피해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지도해 주세요.



멈추라고 말하기

"그만해!", "기분 나쁜 행동이야"라고 분명하게 해요.  
(여러 명이 함께 말하면 더 큰 힘이 돼요.)

함께 있어 주기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괜찮니?", "우리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곁을 지켜줘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친구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어른에게 알리기

내 힘으로 멈추기 어려울 때는 즉시 선생님이나 보호자 등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요.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친구를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 06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요.

-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회복적 대화 모임'을 신청해 주세요.
-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SPO(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통역이 필요하면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327-1370)에 요청하세요.

## 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이런 점도 교육해 주세요.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해주세요.

Check!

-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 부모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지 않아요.
-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수락하지 않아요.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철저히 해요.
- SNS와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 도박 예방 교육도 해주세요.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heck!

- 자녀가 건전한 경제관념('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갖도록 지도해 주세요.
- 자녀가 용돈을 자주 많이 요구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보세요.
- 자녀의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증서 없이 개설이 가능한 계좌)
-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앱을 점검하고 유해사이트를 차단해 주세요.
-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전문기관과 상담해 주세요.

# II 회복적 대화 모임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마·리·내 회복적 대화 모임**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홍보 영상

## 01 마·리·내 회복적 대화 모임이란?

### • 마·리·내란?

'미(미안하고)·리(이해해 주는)·내(내 마음과 네 마음)'의 줄임말로, 갈등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

### • 회복적 대화 모임(화해중재)이란?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는 대화. 처벌이 아닌 이해·사과·책임·재발방지 약속으로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 운영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갈등 조정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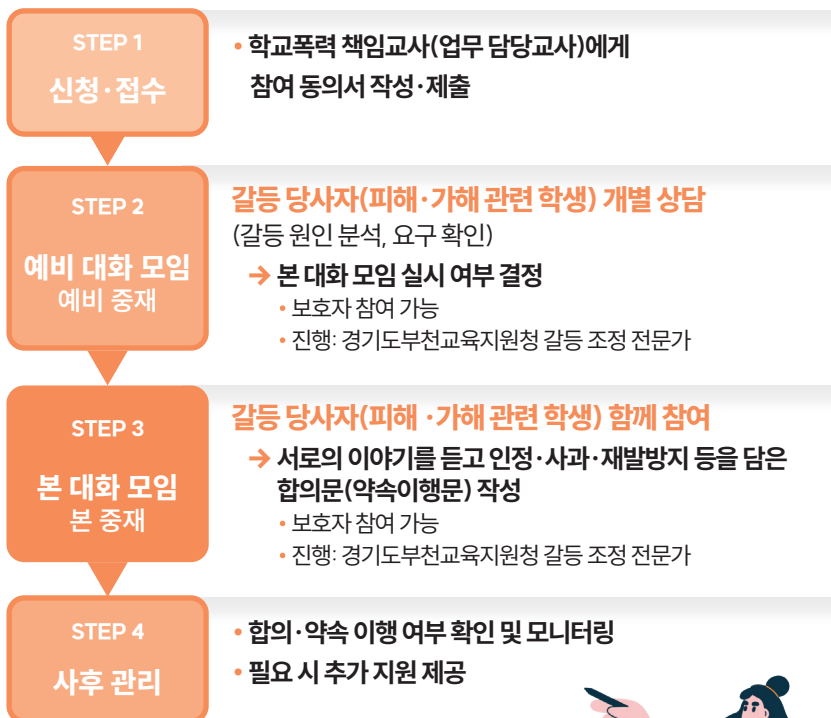
✓ 목적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 02 왜 회복적 대화 모임이 필요한가요?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미리내 회복적 대화 모임                           |
|-------|---------------------------|---|
| 목적    | 규정에 의한 처벌·조치              | 가해 학생의 자발적 책임+피해 회복 +관계 회복+재발 방지        |
| 관점    | 누가, 무엇을 잘못했나?<br>(응보적 정의) | 피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br>(회복적 정의)        |
| 결과    | 조치 처분                     | 합의문(자발적 약속 이행) 작성                       |
| 기대 효과 | 사안 처리·책임 부과               |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건강한 관계 재형성,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

**Q.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회복적 대화 모임에 참여해야 하나요?**  
→A 피해학생의 회복에 필요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3 어떻게 회복적 대화 모임이 진행되나요?



**Q. 회복적 대화 모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언제든 가능합니다.** 학교생활 중 갈등 발생 시,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

**Q. 예비 대화 모임에만 참여하고 본 대화 모임은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비 대화 모임은 각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본 대화 모임 참여 여부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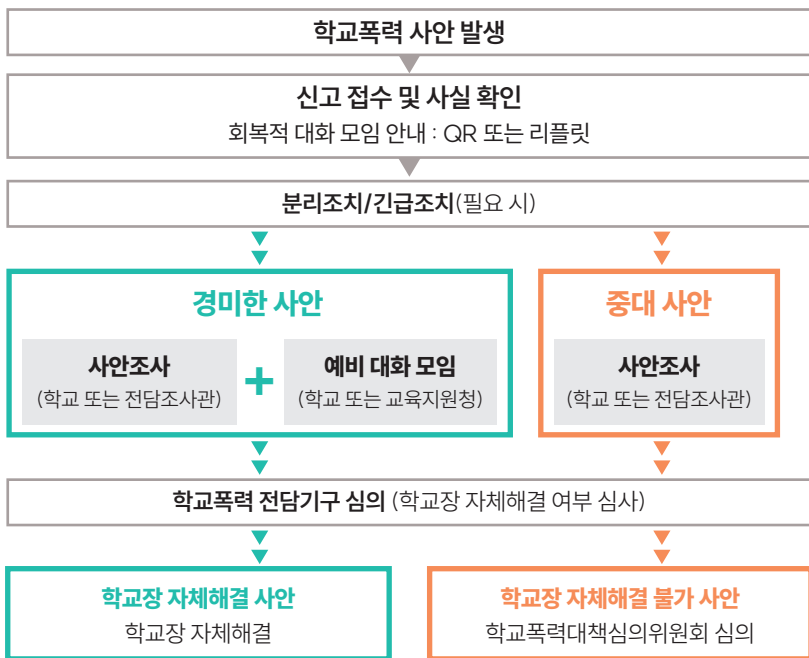
**Q. 대화 모임을 통해 화해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문(약속이행문)에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됩니다.**  
추가 피해 발생 시 합의 내용이 후속 조치에 반영될 수 있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합니다.

## 04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회복적 대화 모임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사안(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경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와 예비 대화 모임(=예비 중재)을 함께 진행하며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



Q. 회복적 대화 모임을 신청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회복적 대화 모임과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갈등 뒤에 남은 상처, 그냥 두면 아이의 성장을 흔들립니다.

**지금 대화로 회복하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미·리·내 회복적 대화 모임**을 신청하세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032-620-0132

# III 학교폭력 사안 처리

## 01 신고 및 접수는 이렇게 해요.

### 신고 방법

- **교내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신고
- **교외 신고 방법** : 전화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 **❗ 참고 학적 변동 제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학 금지)

### 분리 조치

- 피해 관련 학생의 분리 의사 확인 후, 가해 관련 학생을 1일~7일 이내 분리
- 관련 학생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 요청 시, 양쪽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분리
- 분리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분리하지 않음.
- **❗ 분리 예외 사항** -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을 때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긴급 조치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바로 지도해야 할 때 학교에서 조치

## 02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요.

### 사안 조사 | 학교 또는 전담조사관

- 학교에서 최초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안(문제)에 따라 학교 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을 직접 만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
-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확인서 및 목격 관련 학생 면담, CCTV, 녹취록 등 관련 자료 확보

### 03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가 열려요.

#### 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① **참고**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 요청 불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지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는 경우

### 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요.

#### 심의 개최

-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심의 요청
- **교육지원청** : 학교,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 개최 안내(참석, 진술 방법 등 포함)
- **학생과 보호자**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① **참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시 진행 순서



## 05 조치 처분이 통보돼요.

### 조치결정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14일 이내 우편으로 조치결정 통보

#### ❗ 참고 조치결정 종류

|              |   |
|--------------|---|
| 피해학생<br>보호조치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br>(제2호) 일시 보호<br>(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br>(제4호) 학급교체<br>(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가해학생<br>선도조치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br>(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br>(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br>(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br>(제4호) 사회봉사<br>(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br>또는 심리치료<br>(제6호) 출석정지<br>(제7호) 학급교체<br>(제8호) 전학<br>(제9호) 퇴학처분 |

## 06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교육청에 행정심판, 법원에 행정소송 신청 가능

#### ❗ 참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음.



폭력은 **제로** 행복은 **바로** 관계는 **새로**



파수꾼 **제로**



지혜의 **바로**



관계의 **새로**

다툼은 끝났어도,  
마음의 상처는 남습니다.

치유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BUCHEON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제로센터

- ☎ 032-620-0135(상담)
- ☎ 032-620-0132(회복적대화모임)
- ☎ 032-620-0145(피해전담지원)



부천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 ☎ 112 (긴급 신고)
- ☎ 117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여성가족부 지원·경기도·부천시 위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032-327-1370



위기 청소년의 좋은 친구  
AGAIN 어게인 비영리민간단체

☎ 032-662-1318